|  |  |  |
| --- | --- | --- |
| **물 품 공 급 계 약 서** | | |
| 계    약    명 | 모바일 키보드보안 솔루션 도입 | |
| 계  약  금  액 | 일금이천만원정 | |
| (\ 20,000,000원/VAT별도) | |
| 계  약  기  간 | 2019년 00월 00일 ~ 2019년 00월 00일 | |
| 계 약 목 적 물 | 품명 (세부내역 견적서 참조)   * ToucnEn mTranskey for Android : 1식 * ToucnEn mTranskey for iOS : 1식 | |
| 납품조건 : 설치 및 검수 완료 | |
| 하 자 보증기간 | 최종검수 후 12개월 | |
| 지 체 상 금 율 |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 |
| 납 품 장 소 | 검수자 지정장소 (국내) | |
| 대금 지급조건 | 지급일자 :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 현금지급 | |
| 보 증 조 건 | [보증보험 있는 경우 표기] | |
| 첨 부 문 서 | 1. 물품공급 내역서(견적서) 1부 | |
|  | |
| 위탁인과 수탁인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물품공급 계약서 및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물품공급계약 (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00월 00일 | | |
| "위탁인" | | "수탁인" |
| 회 사 명 :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325 6층 601호    대 표 자 : 성 종 화 (인) | | 회 사 명 : ㈜라온시큐어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145  우신빌딩 11F~13F  대 표 자 : 이 순 형 (인) |

**물품공급계약서 일반조건**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수탁인이 위탁인을 위하여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은 물품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 각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 공급 : 수탁인이 [첨부]의 물품공급 내역서에 따라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
2. 검수 확인서 : 물품 설치에 대한 Document(설치 현황, 물품 가이드 자료)

**제 3 조 【계약의 구성】**

본 계약은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공급 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일반조건 상 첨부 계약문서로 구성된다.

각 계약문서의 조건이 상충하는 경우, 위의 순서대로 그 효력이 우선한다.

**제 4 조 【수탁인의 물품공급 제공 의무】**

① 수탁인은 위탁인에게 [첨부] 물품공급 내역서에 정한 범위에서 각종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수탁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5 조 【대금지급】**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본 계약에서 정한 계약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 30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6 조 【계약의 변경】**

1. 본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목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면으로 서비스의 추가, 서비스 범위의

변경, 기타 본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변경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합리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위 요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물품의 범위 및 기타 변경내용의 기술
3. 추가 또는 변경에 따른 검수, 인수조건 및 기타 계약조건에 미치는 영향
4. 본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내용에 따라 계약대금 또는 계약기간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모든 계약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위탁인과 수탁인 간 계약 변경에 대한 서면 합의 없이 수탁인이 위탁인이 요구한 추가 또는 변경 서비스를 수행한 경우, 위탁인과 수탁인은 변경 요청 전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추가 또는 변경 서비스 수행에 대한 대가를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 7 조 【보증】**

수탁인은 제시한 물품공급내역서와 동일한 품질을 가진 물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 전후를 막론하고 수탁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당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상품공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위탁인에게 정상품을 즉시 대체, 공급하도록 한다.

**제 8 조 【기밀보호】**

① 위탁인과 수탁인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중 및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 이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관련정보 등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 계약에 따라 일방이 타방에 기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는 현재 또는 장래에 보유하거나 소유하는 상표, 저작 또는 특허에 따른 여하한 권리 또는 사용권을 타방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③ 수탁인은 본 계약의 수행을 완료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위탁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복사본을 위탁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위탁인 또는 수탁인은 상대방이 본 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9 조 【지식재산권】**

1. 수탁인는 납품한 물품이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일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2. 수탁인은 납품한 물품에 관하여 위탁인 또는 수탁인과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탁인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방어하며, 위탁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의 상호,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 10 조 【협력의무】**

① 위탁인과 수탁인은 본 계약상 수탁인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데이터, 정보 등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등 본 계약 이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위탁인은 수탁인이 본 계약 상 물품을 제공함에 있어 위탁인의 사업장 등에서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작업 실시장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기, 설비 등 작업환경 포함)를 무상으로 수탁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위탁인이 본 조에 의하여 협력하여야 할 제반사항의 지연으로 인하여 수탁인의 서비스 제공이 지연된 경우 수탁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

1. 위탁인은 물풀 공급 이행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연되어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인에 대하여 인원의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위탁인은 물품공급의 수행과정이나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검수】**

1. 수탁인은 [첨부] 물품공급내역서에 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위탁인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위탁인은 본 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수탁인의 입회 하에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인의 서비스가 늦어지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탁인이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검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탁인은 계약결과물의 검수 결과 검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탁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탁인이 본 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검수결과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에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위탁인은 수탁인이 제공한 서비스가 본 조에 의한 검수에 합격할 때까지 수급인에 대한 계약대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 12 조 【손해배상】**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인이 위탁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수탁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수탁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13 조 【지체상금】**

① 수탁인은 본 계약에 정한 납기 내에 계약결과물을 위탁인에게 제공하지 못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본 계약에서 정하는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함)을 위탁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된 부분이라 함은 검수 완료된 기성부분, 위탁인이 이미 관리 사용하고 있는 부분 및 객관적으로 위탁인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위탁인이 즉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행을 완료한 부분 등 기완료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본 계약 제15조에서 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위탁인의 책임으로 본 계약 상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3. 본 계약 제11조에 의한 검수에 소요된 기간

**제 14 조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수탁인은 계약결과물의 검수 합격 후 1년 간 계약결과물의 품질 및 성능에 하자 발생, 유지보수 필요 또는 기타 위탁인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무상으로 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위탁인은 수탁인에게 하자발생의 원인규명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조 【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양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생하여 본 계약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경우 양 당사자는 인도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준비했거나, 이미 인도되었거나, 기성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미이행부분에 대하여 상호 책임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즉시 손해의 축소 등을 위한 조치에 착수하고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협의를 진행한다.

**제 16 조 【해제·해지】**

①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에 대하여 은행거래 정지, 파산, 회생절차 등이 개시되거나 상대방이 이를 신청한 경우

   2. 상대방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송,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3. 상대방이 발행, 배서, 인수 또는 보증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분되어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일방의 임직원의 집단퇴사, 노사분쟁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수탁인이 대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함으로써 본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6. 본 계약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②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정요구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100를 초과한 경우

1.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인은 해지 시까지 완성된 부분을 위탁인에게 제공하고, 위탁인은

수탁인이 제공한 기성부분에 상응하는 계약금액을 수탁인에게 지급한다.

④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7 조 【양도금지 등】**

위탁인 또는 수탁인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자신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18 조 【분쟁해결】**

① 본 계약의 수행 중 양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인과 수탁인은 즉시 본 계약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후 본 조 제1항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본 조 제2항에 의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여 해결한다.

④ 본 계약 및 별첨 계약문서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완전하고도 유일한 합의를 이루며, 이전의 모든 서면 또는 구두 합의를 대신한다.

|  |
| --- |
| **물 품 공 급 내 역 서** |
|  |